

기획 우리고을 포천의 문화유적 ⑰ - 총목단

# 소흘읍 무봉1리 33번지 총목공 유응부 선생 제단

## 조선시대 유응부·양치·이어 등 3인 배향



최종규  
포천명유회 회장

- 지정번호: 경기도기념물 제102호
- 지정년월일: 1988년3월21일
- 시대: 1746년(영조 22)
- 소재지: 소흘읍 무봉1리 27
- 규모: 정면 370cm, 측면 690cm (장방형 곡담)
- 재료: 목재 및 화강암

총목단은 소흘읍 무봉1리 33번지에 있다. 사육신의 한 사람인 총목공 유응부 선생의 제단으로, 이 제단 옆에는 총목공과 한남군 이어, 퇴은 양치의 단비가 나란히 서 있다.

처음 총목단을 설한 것은 1746년(영조22)이다. 이 당시는 총목공의 단비만 세웠기 때문에 총목단이라 이름하였다. 이 총목단은 대원군 때 서원철폐령과 함께 철폐되었으며, 한때 손씨 일가의 묘지가 되기도 하였다. 당시 오위장이던 손형수가 부하를 동원하여 총목단과 유허비를 모두 제거하고 이 자리에 자기 선대의 묘역을 만든 것이다.

이에 포천의 유림들은 분격하

였다. 1873년(고종10)12월17일자로 이병규, 송상희 등이 상소를 올려 시정을 촉구하였다. 이 상소가 받아들여져 손씨 일가는 처벌되고, 당시 포천현감 박용민도 파출되었다. 손씨 일가의 묘소도 모두 파헤쳐졌다.

그 후 포천의 유림들이 총목단을 복원하려고 애써 왔으나, 재정상 어려움을 겪어 부득이 주변의 유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 한남군과 퇴은공의 단비도 건립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본래의 총목단에 한남군과 퇴은공을 함께 배향토록 삼위의 설단이 이루어진 것이다.

총목단은 1단의 장대석 위에 잔디를 심어 지면과 구분하였고, 북단에 남향으로 총목단의 단비를 중앙에 모시고, 좌측에 한남군을, 우측에 퇴은공의 단비를 모셨다. 한남군과 퇴은공의 단비는 약간 정면 안쪽으로 내려 중앙에 위치한 총목공의 단비와 간격을 떨어지게 하였다.

삼위의 단비는 화강암으로 된 3급의 대석과 오석으로 비신을 세웠으며, 단비 앞에 각각 상석을 설치하여 향사에 이용토록 하였다. 단비 주위는 자연석으로 쌓고 개와를 울려서 만든 곡장을 둘러쌌으며, 회문과 연결하여 외부로부터의 훼손을 방지토록 하였다.

총목단에는 총목공의 유허비도 함께 있는데, 비문의 글씨는 유적이기 썼다. 이 유허비각의 증거기는 김평목이 썼다.

그러나 당일 별문검을 폐하여 거사를 후일로 미루었다가 김질의 밀고로 사건이 탄로되어 모진 고문 끝에 죽었다. 유학에도 조예가 깊었으며 시조 3수가 전한다. 숙종 때 병조판서에 추증되었고 과천의 민절서원, 홍주의 노운서원, 대구의 낙빈서원, 영월의 창절사, 강령의 충렬사 등에 제향되었으며 시호는 총목이다.



1988년3월21일 경기도기념물 제102호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있는 소흘읍 무봉1리 33번지 소재한 총목단 전경으로 조선시대 사육신의 한 사람인 총목공 유응부 선생의 제단이다.

### ▶배향인물

· 유응부(兪應孚)?~1456(세조2) 조선시대 무신이며, 사육신의 한 사람이다. 소흘읍 무봉리에서 출생하였고 자는 신지·선장, 호는 벽량이다. 키가 크고 용모가 장엄하여 힘이 세고 활을 잘 쏘았다. 무과에 급제하였고 세종과 문종의 총애를 받았으며 철지중추부사와 평안도절제사를 거쳐 1455년(세조1)에는 동지중추원사에 이르렀다. 이해에 성삼문, 박팽년 등과 단종복위운동을 꾀하여 명나라 사신 초대연에서 별문검이 되어 세조를 살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당일 별문검을 폐하여 거사를 후일로 미루었다가 김질의 밀고로 사건이 탄로되어 모진 고문 끝에 죽었다. 유학에도 조예가 깊었으며 시조 3수가 전한다. 숙종 때 병조판서에 추증되었고 과천의 민절서원, 홍주의 노운서원, 대구의 낙빈서원, 영월의 창절사, 강령의 충렬사 등에 제향되었으며 시호는 총목이다.

· 양치(楊趾)1400(정종2)~1483(성종14) 조선전기 무신·충신. 신복면 기지리에서 거주했고 묘가 있다.

호는 퇴은, 본관은 청주. 도첩의 시종 기의준손, 찬상사 지수의 손, 경안공 천진의 자, 세종 때 단종의 유모였던 양혜빈의 숙부, 총목단에 추배되어 있다. 세종때 김중서가 아인(여진족)을 토벌하여 6진을 개척할 때 중사한 공을 인정받아 함경도 병마절도사, 황해도병마절도사, 영암군수 등을 지냈으나 세조가 계유정란으로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위를 찬탈한 한편 박팽년 등 사육신의 화를 입자 관직을 버리고 기지리(불stoi)에 은거하여 두문불출하였다. 정조 때 단종에 대한 충성을 인정받아 포상되었다.

· 이어(?~1456(세조2)) 한남군 이어는 자는 군옥, 시호는 정도이다. 세종의 12째 아들로 해빈 양씨의 소생이다. 양씨는 단종의 유모이기도 하다. 양씨는 세조가 단종을 폐위시키고 강제로 옥쇄를 빼앗으려 하자 부당함을 들어 극구 만류하다 화를 입었다. 이때 영종군은 화를 입었고, 한남군은 양지에 유배되었다. 다시 아산·금산에 이배되었다.

1456년(세조2년)에 금성대군이 순천부사 이보흥 등과 결탁하여 단종의 복위를 꾀하려다가 발각되자 유배지에서 함께 화를 당하였다. 정조때 정도(貞悼)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 ●●● 특별기획 ●●● 경찰수사권 독립에 관한 연구 ⑩

# 사법경찰과 검찰의 관계

검사는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할 권한을 가진다. 검사의 소추관으로서의 지위에서 비롯된 당연한 권한이다. 이를 특이 논하는 실익은 법원이 자신의 오관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고 반드시 당사자의 청구가 필요하다는 데 있다.

즉 미확정재판은 상소에 의해서 정정이 가능하고 확정재판은 재심청구에 의해서 정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상소·재심청구는 오관에 의하여 자기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 것을 구제하기 위한 것임에 반하여, 검사의 상소·재심청구는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한다는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이는 검사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상소·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백히 나타나지만, 확정 판결의 법률상 오관을 시정하는 비상상고의 경우에는 더욱 명백히 나타난다.

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지휘한다. 다만 구속영장의 집행이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은 예외적으로 재판장·수명법관·수탁판사가 재판집행을 지휘할 수도 있다. 검사는 사형 또는 자유형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 하도록 하고 있는데, 검사가 발부한 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재판의 집행에 관하여 법원이 집행지휘를 하는 범원주의와 검사가 하는 검사주의가 있다. 영미에서는 법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에 반하여 우리 형사소송법은 검사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재판의 집행사무는 자유형의 집행, 벌금·과료·추징금의 징수 등 그 사무처리에 있어 광범위한 행정력이 필요하며, 신속성·기동성이 요청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동성과 행정력을 배경으로 한 검사에게 재판의 집행을 지휘·감독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검사는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접 소송을 수행하거나 그 소송수행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처분행정청이 피고가 되나, 공익의 대표자이고 법률전문가인 검사에게 직접 소송수행을 하거나

소송수행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이 밖에도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라는 지위로 말미암아 각종 법령상의 여러 권한과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로 하고 범죄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제196조 이외에 이러한 관계를 표현해 주는 또 다른 법규가 있다.

예컨대 검사의 조직과 권한에 관한 검찰청법 제53조와 제53조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과 동일한 것이 있으며, 특히 동법 제53조는 사법경찰관리의 검사에 대한 복종의무를 명문화하여 양자의 관계를 상명하복관계로 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수사가 사실상 경찰에 의해서 실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주체는 검사이고 사법경찰관리는 어디까지나 검사의 보조기관에 불과하다.

경찰과 검찰의 종립목적은 범인을 검거하여 범죄혐의를 확정 지음으로써 범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인권침해를 극소화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이 두 형사사법기관이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법원검거로부터 위법 판결에 이르는 형사사법절차에 장애가 초래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수사체제상 양자 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구체적 법규내용들을 고찰하여 검찰과 경찰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으며, 그 문 제점은 어떠한 것인지를 지적하여 장래 검찰과 경찰이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경찰의 검사에 대한 보고의무는 크게 두 가지로서 수사사무 보고의무와 정보보고의무가 있다. 사법경찰관은 내란·외환 등 중요범죄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관할지방경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상사태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 하에서는 범죄발생의 염려가 있을 때라도 그 통제를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법무부 규칙으로부터 검찰은 사법경찰의 수사개시까지도 독자성을 부여하지 않을 의도임을 알 수



노영민  
포천경찰서

있다.

또한 사법경찰관은 소의 발생 기타 사유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을 때와 정당·사회단체의 동향이 사회질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과 경찰조치를 지체 없이 관할 검사장 및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는 경찰에 고유한 범죄예방 및 정보보조에 대하여도 검찰이 개입하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법경찰은 형식적으로는 검찰에 모든 사건에 대해서 보고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송치 단계나 영장을 청구할 때가 되어서야 검사가 인지하게 된다. 그리고 보고에 있어서도 범죄가 점차 광역화·속도화 하고 있는 현실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사법경찰관은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할 때에 관할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하며, 고소·고발사건의 경우 2개월 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하여야 하고, 만약 기간내 완료치 못한 때에는 그 연장품신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사건의 송치 후에 수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사건의 송치 후에 당해 사건에 속하는 피의자의 여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주민검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법규들로부터 사법경찰은 '형의 없음', '죄가 안 될' 및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사건에 대해서도 자체의 수사종결권을 가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

# 16년 동안 한결 같은 맛을 제공하는 일번지 암소이동갈비

### 신메뉴 출시



자연산갈비  
민물장어 전문

## 일번지 암소갈비 (2F) 풍천민물장어 민물 매운탕



매운탕, 쏘가리회, 참게탕, 빠가사리, 잡고기, 매기매운탕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149-4  
대표 김애화  
031)542-1887~8